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

2015년 11월 30일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전문위원 김용범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7일(火)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5년 11월 20일(金)

4. 관련근거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
- 국토교통부 “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”
-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3조

5. 개정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서 위임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6. 주요내용

- 「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」에 의거 안건 처리 기한과 반복 심의 횟수 제한(안 제6조의2).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설치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16조)
-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3조제2항에 의거 우리구 도시·건축공동계획위원회의 구성방안 마련(안 제17조)
-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의 임기를 준용(안 제18조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」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방안 마련(안 제19조)
- 기타 일부 조문 정비

7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서 위임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(안 제6조의2)에서 「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」에 의거 안건 처리 기한과 반복 심의 횟수 제한 기준을 설정 하였으며, (안 제16조)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·건축공동

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였고, (안 제17조)에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3조제2항에 의거 우리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, (안 제18조)에서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의 임기를 준용하였으며, (안 제19조)에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 계획 조례」 제3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구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